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이메일(전자우편)		
	⑤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⑥거래상대방 여부	☐ 여 ☐ 부	
공급자 (미발급자)	⑦상호(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소재지					
신고내용	⑫거래일자			⑬거래금액		
	⑭현금지급일			⑮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		
	⑯품목		⑰수량		⑱단가	
	⑲거래증빙					
	⑳그 밖의 참고사항 (발급요청여부)					
※ 신고대상업종은 뒷면 참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제5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명의인		계좌번호	
※ 첨부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포상금 지급계좌 통장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단, 2012.2.2.전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을 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여부란(⑥)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⑫)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 분	업 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블런스 서비스업
3.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 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마용업, 손·발톱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가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모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 마트, 체인화 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6.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비교: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대상은 상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서의 처리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급자(미발급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제출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가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공급자(미발급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